

철도차량운전규칙 일부개정령안

철도차량운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**본선을**”을 “**선로를**”로, “**조성된**”을 “**철도운영자가 편성하여 열차번호를 부여한**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“**철도차량**”이라 함은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동력차·객차·화차 및 특수차를 말한다.

19. “**운전취급담당자**”란 정거장, 신호소, 차량기지 등에서 철도신호기·선로전환기 또는 조작판 등을 취급하는 자를 말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**철도운영자 등**”을 “**철도운영자등**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철도운영자등은 제2항에 따라 열차를 운행하고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 및 절차를 수립하거나 수정할 때 이와 관련된 다른 철도운영자등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

제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정거장, 신호소, 차량기지 등에서 철도신호기·선로전환기 또는 조작판 등을 취급하는 자

7. 원격제어 입환시스템으로 입환작업을 수행하는 자

제7조제2항 중 “**아니한다**”를 “**아니할 수 있다**”로 한다.

제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차량의 화물 적재 제한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기준·절차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27조 중 “열차운전”을 “철도운영자등은 열차운전”으로 한다.

제30조제1항 중 “열차를”을 “작업 또는 공사 관계차량 외의 열차”로 한다.

제31조제2항 중 “차량운전취급책임자”를 “운전취급담당자”로 한다.

제35조제9호 중 “폭음신호 또는 화염신호 등 특수신호”를 “특수신호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의2. 무인운전의 경우 무인운전 모드 외 수동으로 운전하는 때

제36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.

제45조 중 “차량운전취급책임자의”를 “운전취급담당자의”로, “차량운전취급책임자는”을 “운전취급담당자는”으로 한다.

제46조제1항제2호 중 “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열차간”을 “열차간”으로, ““자동열차제어장치””를 ““열차제어장치””로 한다.

제49조제2항제6호 중 “자동열차제어장치”를 “열차제어장치”로 한다.

제50조제2호 중 “통신식·지도통신식·지도식”을 “통신식·지도통신식·지도식·지령식”으로 한다.

제52조제1호가목 및 나목 중 “열차폐색구간에”를 각각 “폐색구간에 열차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“열차폐색구간에”를 ““폐색구간에 열차”로 한다.

제53조제1항 중 ““열차폐색구간에”를 ““폐색구간에 열차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“열차 폐색구간에”를 ““폐색구간에 열차”로 한다.

제54조제4호 중 “열차자동제어장치”를 “열차제어장치”로 한다.

제56조제1항 중 “운전취급책임자”를 “운전취급담당자”로 한다.

제58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차량운전취급책임자”를 각각 “운전취급담당자”로 한다.

제5장제2절에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4조의2(지령식의 시행) ①지령식은 관제업무종사자가 열차 운행 감시가 가능하고, 운전용 통신장치 기능이 정상인 경우에 관제업무종사자의 승인에 의해 시행한다.

②지령식을 시행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지령식 시행 구간에 열차 또는 차량이 없음을 확인할 것
2. 기관사에 승인번호, 시행구간, 운전속도 등 주의사항을 통보할 것
3. 별도의 폐색구간 경계를 정할 것

제5장제3절의 제목 “자동열차제어장치에 의한 방법”을 “열차제어장치에 의한 방법”으로 한다.

제65조의 제목 “(자동열차제어장치에 의한 방법)”을 “(열차제어장치에 의한 방법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자동열차제어장치”를 “열차제어장치”로 한다.

제66조부터 제6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6조(열차제어장치의 구분) 열차제어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

다.

1. 자동열차정지장치(ATS : Automatic Train Stop)
2. 자동열차방호장치(ATP : Automatic Train Protection)
3. 자동열차제어장치(ATC : Automatic Train Control)

제67조(자동열차정지장치의 구비조건) 자동열차정지장치는 지상 선로상의 철도신호기 현시정보를 검지하여 열차를 제어하는 장치로서, 열차가 지상에 설치된 신호기의 현시 속도를 초과하면 열차를 자동으로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.

제68조(자동열차방호장치의 구비조건) 자동열차방호장치는 발리스(Balise) 또는 무선통신을 사용하여 지상 철도신호기 현시정보 및 선로정보를 수신하고 차상신호장치를 통해 열차를 제어하는 장치로서,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.

1. 선행열차와의 간격, 선로의 굴곡, 선로전환기 등 운행 조건에 따라 제어정보가 지시하는 열차의 속도로 자동적으로 감속시키거나 정지시킬 것
2. 열차 제어정보에 따른 운전속도와 당해 열차의 실제속도를 실시간으로 나타내 줄 것
3. 정지목표까지 제동장치를 자동으로 작용시켜 확실히 정지할 수 있을 것

제69조(자동열차제어장치의 구비조건) 자동열차제어장치는 지상 궤도회로의 연속정보를 수신하고 차상신호장치를 통해 열차의 제한속도를

설정하는 연속제어방식의 열차제어장치로서,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.

1. 선행열차와의 간격, 선로의 굴곡, 선로전환기 등 운행 조건에 따라 제어정보가 지시하는 열차의 속도로 자동적으로 감속시키거나 정지시킬 것
2. 열차 제어정보에 따른 운전속도와 당해 열차의 실제속도를 실시간으로 나타내 줄 것
3. 정지목표까지 제동장치를 자동으로 작용시켜 확실히 정지할 수 있을 것

제73조제2항 중 “차량운전취급책임자”를 “운전취급담당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“차량운전취급책임자가”를 “운전취급담당자가”로, “차량운전취급책임자와”를 “운전취급담당자와”로 한다.

제7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차량운전취급책임자”를 “운전취급담당자”로 한다.

제75조제1항 중 “구간”을 “구간(관제업무종사자가 취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이하 같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.

제77조 단서 중 “상당한 거리로부터 주간”을 “주간”으로 한다.

제82조제2호가목 및 다목 중 “장내신호기·출발신호기 및 폐색신호기”를 각각 “장내신호기·출발신호기·폐색신호기 및 암호신호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다목 중 “차내신호기”를 “차내신호”로 한다.

제84조제6호 표 외의 부분 중 “차내신호기”를 “차내신호”로 한다.

제85조제3항 중 “**차내신호기**”를 “**차내신호**”로 한다.

제91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서행발리스(Balise) : 송·수신용 안테나로 구성되어 지상정보를 차량으로 공급하여 열차의 감속을 유도하는 것

제94조제1호가목 중 “**정지수신호** **현시지점의 외방** 상당한 거리에 **폭음신호** **현시를 위한 신호뇌관을 장치할**”을 “**그에** **상응하는 조치를 할**”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중 “**폭음신호·정지수신호**”를 “**정지수신호**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나목 중 “**서행수신호를 현시한 지점의 외방으로부터 상당한 거리에** **신호뇌관을 장치할**”을 “**그에** **상응하는 조치를 할**”로 한다.

제6장제4절에 제9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4조의2(열차의 방호) ①철도사고등이 발생하여 인접선로에 지장을 주는 등 다른 열차의 정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열차무선방호를 시행하여야 한다.

②열차방호를 확인한 관계열차 기관사는 즉시 열차를 정차시켜야 한다.

제95조 및 제96조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01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원격제어 입환시스템을 사용하여 입환하는 경우